



귀 조합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추가출자 부담해소 및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(16.8.11) 결정을 통해 일반 담보운영자금 제도를 개선하였기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.

1 일반 담보운영자금 개요



•• 용자종류 : 담보물건*에 의한 운영자금

* (담보물건) 예금채권, 지급보증서, 지급보증어음, 이행보증보험증권, 국·공채, 회사채, 주권상장 주식, 양도성예금증서, 부동산,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등

•• 상환기한 :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

•• 용자한도 : 조합원별 500억원* 이내 (담보좌수 연계 폐지)

*담보좌수에 3백만원을 곱한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은 기존 한도 인정

•• 제출서류

- (공통서류) 용자금신청서, 영수증(이상 조합서식), 국세납세증명서
- (담보물건별 서류) 담보물건별 거래지점 문의

2 용자금이자



•• 이자율 구조 : 기본이자율 ± 가감이자율

- 기본이자율 : 전분기 평균 CD(91일) 수익률(3분기현재 1.54%p) + 1.7%p

•• 가감이자율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담보종류 : -0.1%p | - 업무거래 : -0.1 ~ -0.2%p |
| - 용자이용비율 : -0.3 ~ +2.0%p | - 신용등급 : -0.2 ~ +0.3%p |

•• 이자납부

- 납부기일 : 최초 용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, 이후 납부는 매월 최초 납부일과 같은 날
- 납부방법 : 계좌이체, 현금납부, CMS(5일, 15일, 25일 중 선택)



3

기타사항



- 기한이익 상실사유
 - 한도거래약정서 제11조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
 - 융자금이자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
- 특별담보용자(출자좌수와 무관하게 업체별 50억원 한도부여) 제도 폐지

4

시행일 : 2016. 9. 5.(월)



|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개요 |

- (개요)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방법 대신, 부동산소유자(위탁자)가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(수탁자)에게 신탁하고,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조합(우선수익자)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
- (제출서류) 신탁계약서, 수익권증서, 기타 필요한 서류
- (비용절감) 신탁재산관리보수 조합부담, 근저당권설정시 차주가 부담하는 국민채권매입금 미부담 등
- (재산권보호) 신탁등기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불가
- (취급불가 부동산) 공장, 시장 등의 건물 또는 부지, 맹지·농지·임대주택, 공원, 유원지, 개발제한구역 등 (거래지점 문의필요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